

노인장기요양보험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2020. 8.



1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관련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입소자)에 따라 급여비용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에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포함하고,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근무인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를 하여야 함. 그리고 같은 고시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에 따라 시설급여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 동안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함.

사례
1

A요양시설은 등급외자 1명이 2018년 ○월 ○일부터 2019년 ○월 ○일까지 입소생활을 하였음에도 입소자로 신고하지 않고, 입소자 수(월평균 현원)을 사실과 다르게 산정하여 급여비용을 청구
☞ 현원 증가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의무배치인원) 변경

사례
2

B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 1명이 2018년 ○월부터 2018년 ○월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시간으로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청구

사례
3

C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1명이 오전 09:00에 출근하여 오후 15:00에 퇴근을 하였으나, 출근부에는 퇴근시간을 18:00로 작성한 후, 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청구

사례 4	D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 1명이 2018년 ○월 ○일에 실제 퇴사를 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퇴사일 이후 임의로 병가 또는 연차를 근무시간으로 등록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등록한 후 급여비용을 청구
사례 5	E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1명이 2017년 ○월부터 2018년 ○월까지 근무시간 동안 조리실에서 조리업무만 전담하였으나 요양보호사로서 입소자에게 직접적인 수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등록한 후 급여비용을 청구
사례 6	F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 1명이 실제 해당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관의 행사시에만 잠시 방문을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음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시간으로 등록한 후 급여비용을 청구
사례 7	G주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 1명은 2018년 ○월부터 ○월까지 해당기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송영업무는 요양보호사 및 동일 법인의 요양원 직원들이 대신 수행하였으나, 보조원(운전사)이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한 후 급여비용을 청구

□ (알아두기) 등급외자 입소신고 방법

입퇴소내용신고 | 입퇴소내용제출 | 제출이력조회

□ 대상자 명단 ① **추가** 삭제 □ 기본정보(급여계약통보)

순번	성명	생년월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상자추가 [npfa201p01]

□ 추가 대상자 □ 입퇴소 대상자 ④ **저장** 닫기

과거 대상자 신규 대상자 시군구 신고자

인정번호 생년월일

② 인정번호 L- [] ③ 외한 10자리 ④ 조회

수급자는 인정번호 조회, 등급외자는 생년월일로 추가

⑤ >

2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관련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에 따라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겸직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그리고 같은 고시 제55조 (인력추가배치 가산)에 따라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종사자를 배치한 경우에 직종별로 가산 산정함. (단, 요양보호사는 1인당 입소자 수가 시설 2.4명 미만, 주야간보호기관 6.4명 미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1인당 입소자 수가 19명 미만 기준을 충족하여야 직종별 가산을 적용)

사례
1

A요양시설의 간호사 1명은 2017년 ○월부터 2017년 ○월까지 A시설과 병설하는 B주야간보호기관의 간호업무를 겸직 수행 하였음에도 A노인요양시설의 근무형태를 ‘전임’으로 등록한 후, 인력추가배치 및 간호사배치 가산점수를 산정하여 청구

사례
2

B요양시설은 입소자 1명이 실제 2017년 ○월 ○일에 입소를 하였으나, ○일 더 늦게 입소한 것처럼 등록한 후 해당월 입소자 수(현원)를 산정하였고, 해당월 실제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2.4명 이상 임에도 2.4명 미만인 것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를 산정하여 청구

사례
3

C주야간보호의 사회복지사 1명은 2019년 ○월부터 2019년 ○월까지 주야간보호의 사무실이 아닌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 사무실에서 각각의 업무를 병행하였음에도 C주야간보호에서 전임 근무한 것으로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등록한 후 가산 청구

3

정원초과 기준 위반 청구

□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관련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5조(정원초과 감액)에 따라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산정하여야 함.

사례
1

A요양시설은 2019년 ○월 ○일부터 2019년 ○월 ○일까지 등급외자 2명에 대해 입소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정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일자별 현원을 산정한 후 급여비용 감액없이 청구

사례
2

B요양시설의 수급자 2명은 시설입소가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기 이전부터 실제 시설에 선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B기관은 시설입소가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입소신고를 하였고, 선입소기간 동안 실제 정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일자별 현원을 등록한 후 감액적용 없이 청구

□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관련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규정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해야 함.

사례
1

A주야간보호는 2018년 ○월 ○일부터 2018년 ○월 ○일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 감액없이 청구

사례
2

B요양시설은 정원변경 이후 늘어난 정원만큼 신규 입소자가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보험적용 인원을 변경된 정원(입소자 수)으로 변경하지 않았고, 보험적용 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하였음에도 급여비용 감액없이 청구

5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

□ 가정방문기관

관련 근거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 총 시간과 내용을 사실대로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RFID시스템 포함)에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급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함.

사례
1

A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1명은 수급자 2명에게 2018년 ○월부터 2020년 ○월까지 평일(월~금)에는 태그전송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주말(토,일)과 공휴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주말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후 급여비용을 청구

사례
2

B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1명은 2018년 ○월부터 2019년 ○월까지 보호자와 합의하여 부부 수급자 2명에게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요양보호사의 휴대폰 중 실제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서비스 시간에 맞춰서 보호자가 대신 태그전송만 수행한 후 급여비용을 청구

사례
3

C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1명은 2019년 ○월부터 2019년 ○월까지 수급자와 합의하여 수급자의 자택 신발장에 부착된 태그를 탈거한 후 요양보호사 본인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자택에서 태그 전송만 수행하고 급여비용 청구

사례
4

D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1명은 수급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2019년 ○월부터 2019년 ○월까지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간(06:00~09:00)에 맞춰서 태그전송만 수행한 후 급여비용 청구

□ 가정방문기관

관련 근거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 총 시간과 내용을 사실대로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

사례
1

A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 1명은 수급자 1명에게 2018년 ○월부터 2019년 ○월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시작시간에 태그전송을 수행한 후 최대 60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근하였으나, 급여제공기록지를 240분 동안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작성한 후 급여비용 청구

사례
2

B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1명은 2018년 ○월부터 2018년 ○월까지 수급자 1명에게 월~금(일 240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실제 ○요일(특정 요일)은 개인적인 사유로 60분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급여제공기록지를 ○요일에도 240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작성하여 급여비용 청구

사례
3

C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 1명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동안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수급자 자택에 부착된 태그를 탈거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서비스 시작시간(07:00)에 본인의 집에서 태그전송을 수행하였고, 8시 30분이 되어서야 수급자의 자택으로 이동하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에도 180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행정처분(안) 주요 통보사례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과 같은 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제공 제한처분은 해당 종사자가 처분 받을 당시 직종 이외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무원 등 모든 직종에 해당

시설장	○ 지인을 급여제공자로 등록하고 휴대폰 명의를 빌려서 태그전송만 수행하는 방법으로 허위 청구 ○ 실제 근무일수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시설장으로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상근한 것처럼 등록하도록 동의해주고 묵인
사무국장	○ 시설장이 상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임의 작성하고, 청구시스템에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여 가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부당행위에 적극 가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수급권을 빌려준 대가로 매월 20만원을 지급 ○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격증을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처럼 등록하도록 동의한 후 월급은 통장으로 지급받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표자에게 반환함
요양보호사	○ 수급자의 가정에 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직접 소지하고 다니면서 본인의 자택 또는 제3의 장소에서 태그시작 및 종료전송을 수행 ○ 대표자와 요양보호사, 수급자(보호자)가 서비스 미제공을 담보로 부당청구를 담합한 후 급여비용을 지급받으면 일정금액을 분배해서 가짐
사무원	○ 사무원 퇴사 이후에도 시설장과 합의하여 위생원으로 근무시간을 허위 등록할 수 있도록 동의·묵인하는 등 부당청구 행위에 가담
조리원	○ 퇴직하기 전, 몇 개월 동안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고, 지급받은 월급은 대표자에게 반납하였으며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청구하도록 동의하고 묵인